

# 차별에 맞선 50대 중증장애인의 '눈물겨운 승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물꼬를 튼 황신애(여·58)씨는 광주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

'차별'에 맞선 50대 중증 장애인의 5년 가까운 힘겨운 법적 투쟁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생명에 맞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황씨의 상식이 세상에 변화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씨는 이같은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지난 15일 광주지법에서 자신이 제기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황씨가 법원 문턱을 밟게 된 건 지난 2016년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자신이 받고 있던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요양) 대신, 더 지원 혜택이 많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신청'을 받기 위해 변경 신청을 냈다가 복구에서 거부당하면서다.

복구는 장애인활동법 상 '활동지원급여와 비슷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 신청 거부한 광주 복구와 5년 법정싸움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혜택 못받자 소송 중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 헌법 불합치 결정도 이끌어내

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다며 거부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 해당해 자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장애인활동지원법(5조 2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자격을 규정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에는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 이 법에 따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 급

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황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출발, 광주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을 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경우 1월 한도 최고 648만원, 하루 최대 14시간까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급여로는 매월 최고 149만원, 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는 데 그친다.

두 급여 차이가 커 부당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혹시나 해를 입을까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광주지법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정했다.

광주지법은 "65세 미만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장애인을 그렇지 않은 장애인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17년 7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정했다.

황씨는 2004년께 희귀난치성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국문학에 재미를 느껴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고 시를 지어 방통대학문학상까

지 받기도한 시기였다. 몸이 계속 나빠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2011년 4월부터 주 5회·하루 3시간 한도의 지원을 받아왔다. 황씨의 몸 상태가 악화되면서 주 6회·하루 4시간 받는 방문요양으로 늘었다.

황씨는 그래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게 힘들었다.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는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몰아서 해야 했다. 심지어 생리현상까지 그 때 해결해야 했고 이 때를 놓치면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누워있는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하루에 19시간을 혼자 누워있는 날도 있었다. 애꿎은 천장을 향해 욕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이렇다가 방문 요양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받는 게 낫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 과정에서 복구에 신청을 했지만 '요양보호'를 먼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조서비스로 바꿀 수 없다는 게 납득할 수 없었다. 이게 정녕 장애인들을 위한 법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했다.

황씨는 "생명을 두고 아픔과 장애가 차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없다"면서 "생명은 대충 만든 박스 안으로 구겨 넣어져야 하는 물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광주지법도 이같은 점을 반영, 황씨의 손을 들

어줬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15일 황씨가 복구정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 등을 포함해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복구는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황씨는 주머니의 도우미가 컸다고 공을 돌렸다. 그는 "운이 좋게 도움 주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법이 개정돼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몸도 마음도 아픈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간절히 생각한다"고 소망했다.

황씨는 "개인적 소망은 활동보조로 옮겨 지금보다 나은 안정된 서비스를 받으며 공모전에 한번 더 도전하고 두번째 시화집과 에세이집 한 권을 내고 싶다"고 수줍게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현행법이 '잠정 적용'되고 오는 2022년 12월 31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도박 빚 시달리다 금은방 턴 경찰관 징역 1년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금은방을 턴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절도, 상습도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불법 도박 게임으로 생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되자, 파출소를 근무하면서 알게된 금은방을 변형 대상으로 택했다는 게 검찰 기소 내용이다. A씨는 또 변형 당시 운행했던 차량 이동 경로가 '차량번호 자동 탐색 시스템'에 저장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담당자 외 출입통제 구역인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에 침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한때 파견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슬롯머신 도박사이트에서 8억 7000만원 상당의 도박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경찰관이 상습도박을 하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야간에 흥기를 들고 침입, 물건을 훔쳤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수사상황을 확인하려고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침입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해를 보완한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신호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실형 선고

과속으로 차를 몰던 30대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과속한 잘못은 있지만 피해자의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외국인 B(2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50km)를 초과해 81km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호 위반 과실이 있지만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백신 접종하는 어르신들

27일 광주 서구 영주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들이 75세 이상 일반인들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대학병원 직원 식당 잔반 재사용 논란...노조, 책임자 처벌 촉구

대학병원 직원식당에서 잔반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 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28일 오후 화순전남대병원 앞에서 "병원내 직원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잔반을 재사용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측은 "지난해부터 병원 직원식당을 위탁 운영중인 업체가 이미 조리된 반찬을 폐기하지 않고 냉장·냉동 보관했다가 다른 음식조리시 섞어서 조

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직원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또 "병원측에 이같은내용을 알렸지만 병원측은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미온적 입장"이라며 진상파악과 관련자 처벌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